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보도	**배포 시**	배포	2021.8.10.(화)
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김 종 훈(02-2100-2990)	**담 당 자**	유 원 규 사무관 (02-2100-2992)

제 목 :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–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*되고, 신용카드업 겸영시 진입요건 등은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. –

*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여전업감독규정도 함께 규정변경예고

<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>

1 **구독경제 소비자 보호**를 위해 **결제대행업체**가 **유료전환, 거래취소, 환불** 등 **방법과 절차**에 **관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마련**하고, **세부 내용**은 **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** 하였습니다.

2 **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**시 **대주주요건**을 타법과 유사하게 **일부 요건만 심사*하도록 합리화** 하였습니다.

* 부실금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가 아닐 것 등

3 그 외, **부가통신업자(VAN사)**에 대한 **등록취소 요건**의 **확인·검토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**하고, 여전사의 **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**을 **7일**에서 **14일**로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.

<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안 주요 내용 >

□ **구독경제 소비자 보호**와 관련, **시행령의 위임**에 따라 **감독규정**에서는 ❶**유료전환 시 7일 전 사전 고지**, ❷**사용일수·회차 및 사용여부 등을 고려**한 공정한 **환불기준 마련**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.

1 추진배경

1 최근 **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확대 추세** 등에 따라, **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컨텐츠** 등을 이용가능한 **“구독경제”** 가 확산되는 추세이나,

○ 구독경제 이용 시 **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, 해지·환불을 어렵게** 하여 **소비자보호에 미흡**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* 예) (i)구독경제 이용 시 **무료 이벤트 가입** 후 **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** (ii) **서비스를 해지**하고자 하여도 **절차가 복잡** (iii) **환불**도 **금지**되거나 **포인트**로만 환불하는 등의 사례도 존재

※ '20.12.3일, 유료전환, 해지, 환불 과정에서 **구독경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** 발표 → 여전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 등 추진

2 **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전업으로 허가**를 받는 경우와 **동일한 허가요건**(대주주의 자기자본요건 등)을 적용하고 있으나

○ 본업인 **은행업** 등 **인가** 시 **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**의 **엄격한 대주주요건** 및 **재무요건 등**을 **이미 심사**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**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**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

※ '20.11.30일 규제입증위원회, '20.12.10일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추진과제

3 그 외에 **부가통신업자**(VAN사)**의 등록 취소 업무**에 대한 **위탁근거 명확화,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확대**(7일 → 14일) 등의 **정비 필요성**도 **지속적으로 제기**되었습니다.

※ '20.11.30일 규제입증위원회 추진과제

□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**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**해 왔으며

○ 동 개정안이 **'21.8.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었습니다.

※ 관계기관 협의('21.1.4~1.14일), 입법예고('21.1.4~2.15일), 규개위심사('21.4.9~'21.5.10), 법제처심사(~'21.8.2일), 차관회의('21.8.5일), 국무회의('21.8.10일)

2 시행령 개정 및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

1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(§6의16 개정)

□ **(현행)** 그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 시 **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**

□ **(시행령 개정) 결제대행업체**가 **대금결제**(유료전환 등), **거래취소, 환불** 등과 관련하여 **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**을 정할 수 있도록 **위임근거를 마련**하였습니다.

□ **(하위규정 개정 등)** 시행령에서 **위임근거가 마련**됨에 따라, **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**에서 **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**을 마련합니다.

*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(~ '21.8.17일)

여전법 (현행)	**여전법 시행령** ('21.8.10일 통과)	**여전업감독규정(案)**
▪ 결제대행업체가 거래취소·환불요구에 따라야 함 ▪ 그 밖에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	▪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, 거래취소,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마련·공개하도록 함	▪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 마련* ▪ 사용일수 및 회차,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 마련

* 다만,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

** 결제대행업체가 **시행령 및 감독규정 사항을 이행**하기 위한 방안으로 **표준약관에 따라 정기결제 약관 등을 제·개정**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

2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(시행령 별표 1)

※ "디지털금융 협의회" ('20.12.10일) 旣 발표 내용 후속 조치

□ **(현행) 은행** 등이 **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** 경우, **전업으로 허가**를 받는 경우처럼 **대주주 자기자본요건**(출자금의 4배 이상)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

□ **(개선)**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, **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*** **대주주 요건 중 "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**"** 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* 은행업 인가시 대주주요건,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

**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

※ [참고]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("부실금융기관 대주주요건")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

3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(§19의21 개정)

※ "규제입증위원회" ('20.11.30일) 개선 추진 과제 후속 조치

□ **(현행)**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**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**하여야 하나, 타 법령과 비교시 **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지적**되었습니다.

* 「금융회사지배구조법」 제31조제5항은 비카드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2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중

□ **(개선)**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**'7일 이내'**에서 **지배구조법과 동일**하게 **'2주 이내'**로 연장하였습니다.

4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(§23의3 개정)

□ 부가통신업자(VAN사)의 **등록 취소 관련 업무***에 대해 **금감원 위탁 근거를 명확화** 하였습니다.

* (금감원 위탁 업무)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에 대해 확인·검토

3 향후 일정

□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**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**은 **공포한 날부터 시행**하되,

○ **“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”, “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” 관련 규정**은 **공포 후 3개월 후*에 시행**될 예정입니다.

*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 절차가 필요한 데 따라 3개월 후 시행 필요

□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, **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** 등을 **조속히 추진**하여, **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 완료**할 예정입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해외감염병 NOW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